

##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218
----------	------

제출연월일: 2024. 2. 2.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정이유

우정혁신도시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현재는 안착이 되어 지역경제 및 일자리창출 등 공공기관과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노사민정의 책무(안 제2조)

다.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구성, 임기, 해촉, 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존속기한, 의안 발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의견청취, 성실이행 의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근거법규

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자체개선안 동의(가족복지과-39906호, 2023. 10. 11.)

라. 입법예고: 2023. 10. 10. ~ 10. 30.(20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과의 행정적·재정적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5. 노사화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노동, 고용 등의 현안 논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 및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6.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261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존속기한)** 협의회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울산광역시 중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안의 발의)**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

의회의 위원이 속해 있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 등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사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성실히행 의무)** 울산광역시 중구,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등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 거 법 규

## □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이 연 4,2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 미첨부 근거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 예상 소요비용: 4,200천원

- 노사민정협의회: 70,000원×20명×2회=2,800천원

- 노사민정실무협의회: 70,000원×10명×2회=1,400천원

## 3. 작성자

- 소속: 일자리정책과
- 직급: 지방행정주사
- 성명: 권용희
- 연락처: (052)290-4452